

[전직금지분쟁] 경업금지, 전직금지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문제점

- 추상적 용어, 표현으로 광범위한 제한 포함 전직금지약정 -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10787 판결



1. 분쟁대상 전직금지약정 조항

7.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 ① “을”(피고)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갑”(원고) 또는 “갑”의 파트너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가 없는 한 “갑”의 영업과 관련된 타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②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갑” 또는 “갑”의 협력사 및 고객사의 사업상의 비밀, 정보, know-how 등을 임의로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인사상 처분을 수용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활용된 정보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단순 참고 목적이거나 활용된 정보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1. 재직기간 중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직 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법원의 판결요지 - 전직금지약정 효력 부정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유

3)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전직금지약정의 특성상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종, 지역 등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살펴보면 '원고의 영업과 관련된 타 회사', '경쟁회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피고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피고는 이 사건 경쟁회사가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의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다만 원고는 사직 후 2년 동안의 전직금지를 구하고 있다).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 등은 종전의 직장 등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사실상 피고가 동종 업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에게 주는 부담이 상당이 크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사용자로서 가지는 이익의 보호가치의 정도,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전직금지로 인해 피고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제한기간은 1년을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전직금지약정 전부 무효, 최소한 전직금지기간 2년 중 1년 일부 무효, 회사의

전직금지청구 기각 판결

기술탈취, 부정경쟁, 영업비밀, 전직금지, 손해배상, 형사고소, 국제계약, 민사소송,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